

의안번호	제795호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이동우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11월 15일

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이동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9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11월 15일  
발 의 자 : 이동우, 이상식, 김종필,  
김현문, 박지현, 이상정,  
변종오

### 1. 제안이유

-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해 경로당 및 경로당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법령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함 (안 제3조)
  - (현행)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→(개정)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
- 지원내용에 냉·난방비, 양곡비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,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사업을 신설함. (안 제6조)
-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14조)

#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비용추계 : 붙임
- 협의 :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
- 조례안예고 : 예고 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##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”을 “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”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에 정한”을 “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“사업비”를 각각 “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호(중전의 제7호) 중 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”을 “사업”으로 한다.

1. 경로당 운영비(냉·난방비, 양곡 구입비 포함) 지원 사업

6.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지원 사업

제8조의 제목 “(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기능)”을 “(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경로당활성화”를 “경로당 활성화”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사업의 위탁)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노인 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5조에 따라 <u>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</u>이 교부된 충청북도 내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한다.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<u>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지원내용)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<u>각 호에 정한</u>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경로당 운영비</u></li>   <li>2. <u>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사업비</u></li>   <li>3. <u>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</u></li>   <li>4. <u>경로당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 참여활동 관련 사업비</u></li>   <li>5. <u>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제활동 관련 사업비</u></li>   <li><u>&lt;신 설&gt;</u></li>   <li>6. (생략)</li>   <li>7.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<u>사업에 소요되는 비용</u></li> </ol>	<p>제6조(지원내용) ----- ----- <u>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</u>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경로당 운영비(냉·난방비, 양곡 구입비 포함) 지원 사업</u></li>   <li>2. ----- <u>사업</u></li>   <li>3. ----- ----- <u>사업</u></li>   <li>4. ----- ----- <u>사업</u></li>   <li>5. ----- ----- <u>사업</u></li>   <li>6. <u>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지원 사업</u></li>   <li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li>   <li>8. ----- <u>사업</u></li> </ol>

<p>제8조(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기능)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4. (생략)</li> <li>5. 그 밖에 <u>경로당활성화</u>에 관한 사항</li> </ol>	<p>제8조(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기능)  ----- 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4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5. ----- <u>경로당 활성화</u>-----  -----</li> </ol>
<p>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4조(사업의 위탁)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p>

## 관계법령

### □ 노인복지법

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
2. 경로당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)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### □ 노인복지법 시행령

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
2. 법 제34조제1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·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3.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
4.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
5.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
6.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

## 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

제25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)
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
## 비용추계서

### 1. 사업개요

-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에 양곡 구입비, 냉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도모

#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경로당 냉·난방비, 양곡 구입비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
-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

### 3. 관련조문

- 안 제6조(지원내용)

#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# 가. 추계의 전제

- 도내 경로당의 냉난방비(양곡비) 구입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'25년 예산 가내시 산출기초 반영, 지원대상 수는 5년간 연평균 증가 수를 적용하여 산출

구분	단 가(천원)		산출내역(2025년 가내시 기준)			
	사업비	개소당	개월당 (천원)	지급횟수	경로당수	집행계수
냉방비	1,293,000	330	월 165	× 2개월(하절기: 7~8월)	× 4,404개소	× 88.9%
난방비	7,837,000	2,000	월 400	× 5개월(동절기: 1-3 / 11-12월)	× 4,404개소	× 88.9%
양곡비	2,444,000	628	약 52	× 12포대(20kg)	× 4,402개소	× 88.9%

※ 산정기준: 2025년 경로당 관련 사업 예산가내시(노인복지과-4311, '24. 9. 13.)

※ 경로당 냉난방비(양곡비)지원대상

(20)4,204개소, (21)4,213개소, (22)4,237개소, (23)4,265개소, (24)4,276개소, (25)4,404개소

평균 연간 40개소 증가 ⇒ (26)4,444개소, (27)4,484개소, (28)4,524개소, (29)4,564개소

-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사업은 기추진 중인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5개년 평균 예산액으로 산출

나. 추계 결과

- 냉·난방 및·양곡비: ('25년)11,574,000, ('26년)11,673,516, ('27년)11,771,550,  
('28년)11,869,404, ('29년)11,967,172천원
- 경로당 기능보강: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 5년(2020~2024년) 평균  
예산액 869,900천원 적용  
※ ('20)907,800천원, ('21)1,230,000천원, ('22)827,700천원, ('23)751,500천원, ('24)632,5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

- 냉·난방 및 양곡비: 국비(50%), 도비(15%), 시군비(35%) 매칭 지원
- 경로당 기능보강: 도비(100%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**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**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<b>세 입</b>	5,787,000	5,836,758	5,885,790	5,934,702	5,983,586	29,427,836
경로당 냉·난방비(양곡비) 지원	5,787,000	5,836,758	5,885,790	5,934,702	5,983,586	29,427,836
경로당 시설개선	0	0	0	0	0	0
<b>세 출</b>	12,443,900	12,543,416	12,641,450	12,739,304	12,837,072	63,205,142
경로당 냉·난방비(양곡비) 지원	11,574,000	11,673,516	11,771,550	11,869,404	11,967,172	58,855,642
경로당 시설개선	869,900	869,900	869,900	869,900	869,900	4,349,500
<b>재원 조달</b>	12,443,900	12,543,416	12,641,450	12,739,304	12,837,072	63,205,142
국 비	5,787,000	5,836,758	5,885,790	5,934,702	5,983,586	29,427,836
도비	2,606,001	2,620,927	2,635,628	2,650,311	2,664,976	13,177,843
시·군비	4,050,899	4,085,731	4,120,032	4,154,291	4,188,510	20,599,463